

서울특별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권미경 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61호
- 나. 제 출 자 : 권미경 의원
- 다. 제출일자 : 2015년 6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민에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차원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 시장은 시민의 근로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
- 시장은 근로권 교육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시장은 근로권 교육 시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 시장은 근로권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마련하도록 함  
(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나. 관계부서 :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 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관내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피해구제 등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나. 서울시의 노동교육 현황 및 개요

- 서울시는 현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근로자와 사용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참고자료 1)
  -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을 포함한 교과과정의 개선, 지역별 시민노동학교의 운영 등이 있음
-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는 성인, 사용자, 청소년, 공무원 등 노동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의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원하는 장소로 강사를 파견하고 맞춤형 강의의 진행을 통하여 노동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표 1> 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 실적

	구분	계	성인	사용자	청소년	공무원
2014년	교육인원(명)	12,358	2,320	405	7,183	2,450
	교육횟수(회)	144	21	5	105	13
2015년 (6월 15일 기준)	교육인원(명)	6,234	2,078	70	3,749	337
	교육횟수(회)	30	14	1	11	4

- 서울시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위하여 분야별로 강사풀을 구성하고 교육대상자로부터 강의평가설문 실시와 강의기법 및 교육 내용의 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강의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표 2> 분야별 강사 현황과 강의 주요 내용

교육대상 및 분야	강사현황	강의 주요내용
성인	59명	노동인권, 표준근로조건, 권익침해시 구제절차 등
청소년	61명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권리 및 권익침해시 대응방법 등
사용자	77명	노동인권, 표준근로조건 준수 및 노무관리 등
공무원	17명	노동인권, 노동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행정문화 조성 등
합계	214명	

-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추가하고자 교육부에 건의안을 제안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음.

<표 3> 노동교육 관련 건의 및 협의 현황

진행 경위	건의 및 협의 내용
-------	------------

교육부	15.5. 개선안 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등 교과목에 노동권 등 내용 확대</li> <li>- 특성화 고등학교 노동교육의 대상·내용 확대 및 이수 의무화</li> <li>- 참여형 교육, 사례제시형 교육, 집체교육(노동인권캠프)으로 학습효과 제고</li> </ul>
서울시 교육청	15.5.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체험시간을 활용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확대 추진</li> <li>- 노동인권교육시 강사파견 협력 및 교육내용 협의</li> <li>- 공동교재 개발 및 보급 추진</li> </ul>

- 그리고 노동교육 사각지대의 해소를 목적으로 근로복지센터가 없는 자치구(강서·동대문·은평·강동·관악·영등포)에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하여 노동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노동법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다. 근로권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우리 헌법은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근로기준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의무 등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안 제2조에 따르면 근로권 교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 피해구제 등을 포함한 근로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의미함.
- 선진국의 경우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근로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임금의 산정, 근로계약의 체결, 단체교섭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음. 이런 근로권 교육의 영향으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와 노사간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음.
-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공적으로 근로권에 대한 학습과 교육의 제공이 전무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구제수단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근로권에 대하여 존중하는 문화와 인식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근로권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필요함.

## 라. 종합의견

-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과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근로권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안 제8조) 등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1)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아직 우리사회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근로권 교육이 부실하며, 서울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근로권 보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권 교육을 실시한다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동인권의 존중·민주적 노사 관계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1)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 2015년 서울시 노동교육 추진 계획

근로자, 사용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I 추진 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제2항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8호, '15.4.28.)

### II '14년도 추진성과

- 희망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 실시(144회, 12,358명 교육)

계	성인	사용자	청소년	공무원
12,358(명)	2,320	405	7,183	2,450
144(회)	21	5	105	13

- 교육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 강사풀을 구성(8개 분야, 135명) 및 강의 후 노동교육 내용관련 상담으로 교육의 품질 제고

(※강사별 3개의 분야선택)

합 계(명)	일반성인	여성	청소년	외국인	사용자	산업재해	노사관계	공공부문
135	99	43	43	14	86	20	48	30

- 공공기관에 대상별 노동권리 안내서를 제작·배부(42,300부)

제 목	수 량(부)	배부처
	42,300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9,000	○노동복지센터, 노동단체, 자치구, 여성 및 장애인단체, 영세사업장 등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19,500	○특성화고, 프랜 차이즈 본사(던킨도너츠, 피자헛, 스타벅스, 버거킹, 롯데리아 등) ○온라인 구인업체 등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	2,000	○서울글로벌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센터 ○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등



서울시 노동실무 핸드북	1,800	○서울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담당부서
권익과 권리의 법률사무소(웹툰북)	10,000	○서울시본청·사업소,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특성화고, 청소년시설, 노동단체, 노동관련시설 등

### III 추진목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b>노동교육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노동아카데미 확대 운영</li> <li>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li> <li>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강사간담회 개최</li> </ul>	<b>노동교육 강사인력풀 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사모집분야 통합</li> <li>강사신규모집</li> <li>강사출강 기준 마련</li> </ul>	<b>노동교육 교육과정 개선 건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노동권 내용보완·확대</li> <li>특성화 고등학교 노동교육 내용 보완 및 이수 의무화</li> </ul>	<b>노동교육 프로그램 신설 (노동권익센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시민노동법률학교</li> <li>청소년 참여형 노동교육</li> </ul>
---------------------------------------------------------------------------------------------------------------------------------------------	------------------------------------------------------------------------------------------------------------------------------	------------------------------------------------------------------------------------------------------------------------------------------------	---------------------------------------------------------------------------------------------------------------------------

### IV 추진방향

-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 활성화하여 노동교육 기회 확대
- 노동교육 강사인력풀 정비하여 강사간 출강기회 형평성 제고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내용 보완·확대 건의(교육부)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 및 부당대우 대응능력 함양
- 노동교육 프로그램 신설(서울노동권익센터)로 노동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모

## V

## 세부 추진 계획

### 1

###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 활성화

#### 추진배경

- 대부분 노동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운영  
⇒ 찾아가는 노동교육 활성화로 접근성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

#### 추진개요

- 교육기간 : '15. 1월 ~ '15. 12월
- 교육대상 : 노동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단체
- 추진내용
  - 찾아가는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 확대 운영(연 16,000명 교육 목표)
    - 교육희망자가 원하는 장소로 강사를 파견·맞춤형 강의 진행
    - 희망노동아카데미 노동교육 실적을 자치구 인센티브 실적으로 인정
      - ※ [붙임1] 2014년 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현황, [붙임2]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 참조
  - 보도자료 배부, 각종 기관·단체에 홍보 공문발송(각급 학교, 자치구, 노동단체 등)
  - 노동교육 강사 간담회 개최(연 1회)
    - 강의기법 및 교육내용 공유로 강의의 질 향상 도모, 서울시 노동교육 정책제언 등

#### 추진일정

-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 강사파견 : '15. 1월 ~ 12월
-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15. 6월
- 노동교육 강사 간담회 개최 : '15. 11월

## 2 노동교육 강사 인력풀 정비

### □ 추진내용

#### ○ 강사모집분야 통합(4개 분야)

- ('14년 강사정비) 모집분야 변경사항 안내 후 재모집(메일전송, 휴대폰 알림)

내용 \ 분야	청소년	성인	공무원	사용자
특화 내용	청소년 노동권 등	표준근로조건, 구제절차 등	노동인시 행정문화 조성 등	표준근로조건 노무관리 등
공통 내용	노동인권, 노동3권 등			

※ 강사관리대장 기타사항으로 여성, 외국인, 산업재해, 노사관계 전문분야 기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강사구성 및 신규강사모집

- (강사구성) '14년 구성강사(135명)와 '15년 모집강사로 구성

- (신규강사) 市 전체부서, 자치구,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강사 추천 공문발송

· 추천받은 강사는 내부검토(전문분야, 강의경력, 노무경력 등 고려) 후 강사풀에 편입하되, 강사풀 총인원은 최대 200명(강의수요예측치의 120%)으로 함

※ [붙임4]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선정심의기준 참조

◇ '15년 강의수요예측 : 45,000천원(예산)/270천원('14년도 1회평균강의비용)=약166회

#### ○ 강사 출강기준

- 1순위 : 미출강 강사('14년, 15'년)

- 2순위 : NPS지수 50%이상 강사(우선권 부여) 또는 NPS지수 0~50% 강사

- 3순위 : NPS지수 0% 이하 가급적 강의기회 미부여로 강의 배제 원칙

#### ◇ NPS(순수고객추천지수:Net Promoter Score)

① 강의수강자가 작성한 설문지의 평가점수(0~10점)를 바탕으로

▶ 0~6점(비방고객), ▶ 7~8점(중립고객), ▶ 9~10점(지지고객)으로 구분

② “지지고객비율(%) - 비방고객비율(%) = NPS(%) 순수 추천고객지수”

③ 추천지수가 전체 응답자수 대비 50%이상이면 통상 “만족도 높음”으로 봄

※ [붙임3] 순수고객추천지수(NPS) 참조

- 다만, 강사매칭시 전문분야, NPS점수, 강의경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함

## □ 추진일정

- 신규강사모집 등 강사인력풀 정비 : '15. 5월, 12월

## 3 노동교육 교육과정 개선 건의 및 교육청 협의

## □ 추진배경

-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 비중이 미미한 실정
  -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은 중학교 15.8%, 고등학교 16.8%
  - 일반고·특목고·자율고등학교 13~14%, 특성화고등학교 27.3%
  - ※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2014.12.30.)
- 학교 노동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 추진개요

### [노동교육 교육과정 개선건의]

- 건의기관 : 교육부
- 건의방법 : 개선안 공문발송
- 건의내용(개선안)
  - 중·고등학교 사회과목 등 교과목에 노동권 등 내용 확대(교육과정정책과)
  - 특성화 고등학교 노동교육의 대상·내용 확대 및 이수 의무화(직업교육정책과)
  - 참여형 교육, 사례제시형 교육, 집체교육(노동인권캠프)으로 학습효과 제고

### [노동교육 교육과정 교육청 협의]

- 협의기관 :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협의내용
  - 창의체험시간을 활용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확대 추진
  - 노동인권교육시 강사과제 협력 및 교육내용 협의
  - 공동교재 개발 및 보급 추진

## 추진일정

- 개선안 작성 사전준비(현황파악 등) : '15.4월
- 노동교육 개선안 작성 및 공문발송(교육부) : '15.5월
- 교육과정 서울시 교육청 협의 : '15.5월 ~
- 사후관리 : '15.6월 ~

## 4 지역별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노동권익센터)

### 추진배경

- 근로복지센터가 없는 자치구는 노동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움
- 노동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교육대상확대 및 노동교육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지역별 신청자(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신청, 전화신청)
- 교육횟수 : 지역별 5회
- 대상지역 : 6개 자치구(강서, 동대문, 은평, 강동, 관악, 영등포)  
- 근로복지센터가 없는 자치구 중에서 지역 협력이 가능한 자치구를 우선 선정
- 교육내용  
- 노동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사례 중심 노동법 지식(노동기본권, 권리구제 방안 등)과 노동인권 감수성 킷우기

회 차	교육내용(예시)
1강	총론: 비정규직과 노동법
2강	임금체불 대응 (가압류, 민사소송 포함)
3강	근로시간, 휴일, 휴게 법적 쟁점
4강	부당한 해고, 인사 이동 대응 방법
5강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수료식 병행)

### 소요예산 : 비예산(노동권익센터 예산:13,387천원)

## □ 추진일정

- 강사단 구성 및 지역선정 : '15.1월~2월
- 상반기 교육 진행(3개지역) : '15.5월~6월
- 하반기 교육 진행(3개지역) : '15.9월~11월
- 시민노동법률학교 전체 평가 : '15.12월

## 5 청소년 참여형 노동교육(노동권익센터)

## □ 추진배경

- 다음 세대의 예비노동자로서 청소년들의 노동 권리에 대한 주체적 인식 필요
- 청소년들은 편의점 등 노동현장에서 파트타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권익침해와 부당한 차별 경험

## □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서울지역 16~20세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교육 실시(우선대상: 탈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등)
- 교육횟수 : 총 80회
- 교육내용 : 학급당 40명 이하, 2시간 이상 참여형 교육(모의 단체교섭 등)
  -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노동인권 등
- 사업방법
  - 특성화 고등학교 등으로 노동교육 강사파견
  - 학교선정 등 서울시 교육청 협의, 노동권익센터와 연계추진

(‘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추진 ⇨ (‘16년)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 확대

## □ 소요예산 : 비예산(노동권익센터 예산:27,600천원)

## □ 추진일정

- 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추진 : '15.4월
- 교육공지, 신청접수(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 '15.5월
- 청소년 노동교육 실시 : '15.6월~

## VI 소 요 예 산

- '15년 소요예산 : 50,000천원(노동권익센터 예산 41,047천원 별도)
  - 예산과목 :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연번	사 업 명	예산액(천원)	비 고
계		50,000	
1	'서울시 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	50,000	강사비 지급, 강사 간담회 개최
2	청소년 참여형 노동교육 운영	비예산	노동권익센터 예산(27,660천원)
3	지역별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	비예산	노동권익센터 예산(13,387천원)